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1호, 2021. 11. 30. 공포, 2022.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2. 27. ~ 2022.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출연 및 지원)”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을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실용화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실용화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u>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사 업 범위</u>) (생 략)	제18조(<u>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 업 범위</u>) (현행과 같음)
제19조(<u>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 한 출연 및 지원</u>) 법 제34조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비 또 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려 는 자는 출연 또는 지원 금액 ·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u>농업기술 실용화재단</u> (이하 “ <u>실용화재단</u> ” 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9조(<u>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 한 출연 및 지원</u>) ----- ----- ----- ----- ----- <u>한국농업기 술진흥원</u> (이하 “ <u>진흥원</u> ”----- ----- ----.
제21조(<u>실용화재단의 수익사업</u>) ① <u>실용화재단</u> 은 법 제34조제2 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농 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제21조(<u>진흥원의 수익사업</u>) ① <u>진흥원</u> ----- ----- ----- ----- -----. -----.
② <u>실용화재단</u> 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실적 서 및 결산서를 농촌진흥청장에	② <u>진흥원</u> ----- ----- ----- -----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양
여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에 따른 국
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양여,
대부, 사용·수익 허가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재산 또
는 물품의 관리청과 실용화재단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
2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제9조제
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
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
결(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외
한다) 및 그에 따른 기술료 징
수에 관한 업무를 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실용화재단
이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의 10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
액을 실용화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2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양
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진흥원 ----
-----.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진흥원 ----
-----.

③ ----- 진흥원이 ----

--- 진흥원에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연 락 처	(063) 238 - 0976